

**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1 - 4호**

방송법 제7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3에 의거, 제2010-79차 방송통신위원회(2010. 12. 29.)에서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송신 승인을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외국방송 사업자명	방송채널명	국적	방송분야	방송언어
Eurochannel Inc	Eurochannel	미국	영화·오락	영어 등 4개국어
Transmedia Communication SA	I-Concerts	스위스	오락	영어

2010년 12월 29일  
방송통신위원회